

해 양 수 산 부

시 정 요 구

제 목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소홀

기 관 명 부산광역시

내 용

부산광역시는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 등을 위해 매년 해양수산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해양수산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, 【표 1】과 같이 최근 3년간 해양수산부로부터 총 286개의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80,514백만원(연 평균 26,838백만원)을 교부받아 본청 및 해당 구·군에 예산을 배정하여 해양수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.

【표 1】 최근 3년간 부산광역시 국고보조금 교부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사업연도	사업수(개)	주요사업내용	국고보조금액
합계	286		80,514
2014년	81	수산업 행정지원 등	19,334
2015년	109	수산업 행정지원 등	31,014
2016년	96	수산업 행정지원 등	30,166

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 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

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.

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은 후 대통령령¹²⁴⁾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.

「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(기획재정부)」 12. 자치단체 보조사업 (7)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의 규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,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하나,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중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등의 경우¹²⁵⁾에는 반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.

따라서 부산광역시는 해양수산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에 대해 관련 규정 및 교부조건에 따라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사업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산정하여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.

124)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(보조금의 반환 등)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”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한다.

1.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
2.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
3.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
4. 지방자치단체의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중앙관서의 장이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
5.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이자

125)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중 다음의 경우에는 반납대상에서 제외

1.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
2.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
3.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
4. 지방자치단체의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중앙관서의 장이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

그러나 부산광역시는 【표 2】와 같이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사업 시행완료 후 사업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2016년도를 제외한 2014년도 및 2015년도 사업 190개 중 4개의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25,138천원과 보조금 발생이자 7천원을 합한 총 25,145천원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.

【표 2】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미 반납 현황

사업 연도	구분	사업명	예산현황(천원)		국고보조금 미 반납액(천원)		
			예산액	집행액	계	집행잔액	이자
합 계			1,215,000	1,189,862	25,145	25,138	7
2014	본청	○○○○육성 (○○○○육성 지원)	35,000	27,010	7,994	7,990	4
2015	본청	○○○○육성 (○○○○육성 지원)	85,000	77,614	7,389	7,386	3
		○○○○육성 (○○○○안전장비구입)	95,000	94,820	180	180	-
		○○○○○○투자지원	1,000,000	990,418	9,582	9,582	-

조치할 사항 부산광역시장은

[시정] 국고 보조금을 교부받아 완료한 사업 예산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하여 보조금관리 규정 및 교부조건 등에 따라 반납조치 하시기 바랍니다.